

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(정유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7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12.

발의자 : 정유섭 · 김종석 · 윤종필
김성원 · 김순례 · 최연혜
이채익 · 안상수 · 엄용수
홍일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,271천 명, 2015년 15,380천 명, 2016년 15,422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014년 1,330건이 2016년에는 2,307건으로 73%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.

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의 안전관리 개선 등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과 실행의 중요성에 국민적 공감이 있었으나 전담 기관 설립을 비롯한 실질적 조치는 부족한 상황임. 현재의 해양안전관리 체계는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해양사고 감소 및 해양교통 관리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, 특히 선박의 안전운행 관리 등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·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,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·홍보,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·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·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,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·홍보,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·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공단은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,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·계몽 및 홍보, 기술의 개발·보급·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, 자료의 수집, 조사·연구 및 국제협력, 연구용역 사업 등을 수행함(안 제9조).
- 다.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, 보조금·융자금 또는 차입금, 자산운용수익금,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조달함(안 제10조).
- 라.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

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(안 제13조).

마. 정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음(안 제15조).

바.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업무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·서류·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(안 제18조).

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·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, 교육·홍보,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·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) 해양교통안전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·사업소·연구기관·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.

제4조(등기)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(임원)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,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
제6조(대리인의 선임)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

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직원의 임면)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제8조(비밀 유지의 의무)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·계몽 및 홍보
2.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·보급·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
3.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, 조사·연구 및 국제협력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업무
5. 해양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
6.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(受託)
7. 「해운법」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
8.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된 사업

제10조(자금의 조달 등)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.

1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
2. 제9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
3. 보조금·융자금 또는 차입금(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)
4. 자산운용수익금
5.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
6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

제11조(출자 등)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자금의 차입)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
제13조(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)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4조(잉여금의 처리)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.

1. 이월손실금의 보전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

3. 국고예의 납입

제15조(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) ① 정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·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공단의 규정) 공단은 그 조직·회계·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7조(관계 자료 등의 요청)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열람·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8조(지도·감독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·서류·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1. 해양수산부장관이 「해사안전법」, 「해운법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
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
 3.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·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지도·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19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20조(민법의 준용)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1조(벌칙)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22조(과태료) ①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단의 설립준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하며, 공단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.

② 공단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인 해양수산부 차관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④ 공단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⑤ 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⑥ 공단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·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공단 설립비용 및 운영비용의 지원)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설립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공단 설립 첫 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이사장 임명에 관한 특례) 초대 이사장에 대하여는 공단설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.